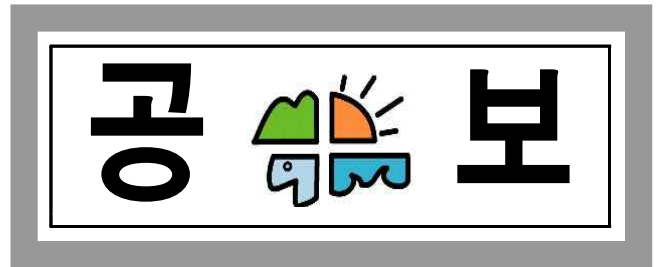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52호 2021년 10월 15일(금)

공 고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2

입법예고

-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4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2021년도분) 대상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15. ~ 2021. 10 . 29.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내 용	부과액 (원)	송달불능 사 유
양*춘	강원도 속초시 선사로*길 7-*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부과 계고	4,481,560	주소 불명
김*정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99, 1**동 ****호		4,590	"
김*정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16*번길 8-*			"
문*례	강원도 속초시 온천로 2**		2,856,380	"
문*동 외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24길 15, 1**동 ****호		1,609,66	"
김*춘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마을1길 *		2,807,100	"
이*선	강원도 속초시 노리5길 **		391,840	"
심*흠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로 1***		103,750	"
황*자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		40,460	"
임*애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기곡길 2*-*		1,613,320	"
최*우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20, 1**동****호		460,610	"
고*열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마을길 *		3,066,040	"
김*순	강원도 속초시 청호해안길 **		1,575,500	"
권*미	강원도 속초시 방죽길 **		17,235,360	"
전*남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12 1**동 ****호		519,180	"
박*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2길 2*, 비 * 호		34,410	"
송*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75, 1**동 ****호		457,520	"
박*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6길 **		1,216,870	"
김*서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84, 1**동 **** 호		27,941,120	"

성명	주소	내용	부과액 (원)	송달불능 사유
홍*명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6길 **		4,821,600	
김*청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 1**-*		68,550	
재단법인새** ***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		2,461,360	
*****개발 주식회사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		4,674,910	
김*호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3길 4*-**		3,496,730	
양*성의 1인	강원도 속초시 논산길 17, 1**동 *****호		1,042,200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2021년도분)하고자 부과 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건축과(☎033-639-2472)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10. 13.

속 초 시 장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관인생략)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0. 13. ~ 2021. 10. 18.(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유혜정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유혜정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유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1. 10. .

발 의 자 : 유혜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아동복지 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안 제5조 ~ 제7조)

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9조(비용보조)

나. 기 타

-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2.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
2. 아동의 안전관련 사업
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
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